

# 남경기노회 담임목사(擔任牧師) 은퇴예우장정(隱退禮遇章程)

## 제1장 본의(本義)

본 장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남경기노회(이하 '본회'라 함)에 소속된 회원이 담임목사로 시무(재직)하고 있는 지교회를 정년이 되어 은퇴할 경우, 또는 시무(재직)중 부득이한 사유(질병 등)로 사직할 경우, 전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상황으로 작고(作故)했을 경우, 지교회가 그에 따른 은퇴 예우규정이 정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을 시, 본회가 총회 헌법에 기초하여 정한 은퇴예우장정(隱退禮遇章程: 이하 '본 장정'이라함)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이요, 쌍방 간에 다툼과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지 못할 때, 본회의 장정에 따라 절차상 그릇됨이나 흠이 없도록 공정하게 지도편달(指導鞭撻)하기 위함이다.

## 제2장 구분(區分)

제1조(조직교회): 당회가 있는 지교회의 원로목사와 은퇴목사에 대한 예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로목사: 지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은퇴예우는 각호와 같다.
  - 1) 법정퇴직금+전별금(위로금)을 지급하며 주택과 담임목사의 매월생활비 70%를 지급한다.
  - 2) 원로목사 작고(作故)시 미망인에게 담임목사의 매월 생활비 50%를 지급한다.
  - 3) 목사가 매월 생활비를 일괄 지급받기 원하면 지교회는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본 장정 제2장제1조제2항의 미망인의 경우도 동일하다.
2. 은퇴목사: 지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 받지 못하거나, 20년 이하 시무(재직)한자, 또는 시무(재직)중 부득이한 사유(질병 등)로 사임하는 목사의 은퇴예우는 각호와 같다.
  - 1) 15년 이상 시무(재직)한자는 법정퇴직금+전별금(위로금)을 지급하며 주택을 제공한다.
  - 2) 15년 이하 시무(재직)한자는 퇴직금+전별금(위로금)을 지급하며, 교회에 끼친 공적에 따라 주택구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유고(有故)목사: 갑작스런 사고나 급사로 작고(作故)한 목사의 예우는 각호와 같다.
  - 1) 20년 이상 시무(재직)한자는 본 장정 제2장제1조제1항제1.2.3목의 원로목사가 받는 예우에 준하되, 생활비는 작고(作故)한 목사의 경우 만(滿) 15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부터 미망인은 만(滿)5년으로 제한한다. 단, 미망인이 작고(作故)한 목사와 본인의 생활비를 일괄 지급받기 원하면 지교회는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 2) 15년 이상 시무(재직)한자는 본 장정 제2장제1조제2항제1목의 은퇴목사가 받는 예우에 준한다.
  - 3) 15년 이하 시무(재직)한자는 본 장정 제2장제1조제2항제2목의 은퇴목사가 받는 예우에 준한다.
4. 만약, 지교회가 고정재산(부동산)이나 운전(운영)자금이 미약하여 원로목사와 은퇴목사에 대한 예우가 힘들 경우, 지교회는 전임자의 예우를 감당할 수 있는 후임자를 청빙하거나, 타 교회와의 합병을 추진할 수 있으며 만일, 조정이 불가할 정도로 교회운영이 힘든 상태인 경우, 담임자는 시무 사면을 하기 전에 잔여 교인과 협의하여 폐 교회 청원을 할 수 있다.  
단, 유고목사는 허위당회가 되므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절차를 관장한다.
5. 지교회에서 담임목사에게 국민연금, 총회은급비, 노후보험을 가입케 하여 대납하였을 경우 원로목사와 유고목사는 법정퇴직금이나 매월 생활비를, 은퇴목사는 법정 퇴직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조(미조직교회): 당회가 없는 지교회의 목사에 대한 예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0년 이상 시무: 시무목사도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면 원로목사 추대를 받을 수 있으므로(헌법 교회정치 제4장제4조제4항), 지교회로부터 원로목사 추대를 받는 경우, 은퇴예우는 본 장정 제2장제1조 제1항제1.2.3목에 준한다.
2. 20년 이하 10년 이상시무: 법정퇴직금+전별금을 지급하되, 주택을 마련하는데 2분의1을 보조한다.
3. 10년 이하시무: 법정퇴직금+전별금을 지급한다.
4. 유고(有故)목사: 본 장정 제2장제1조제3항제1.2.3목에 준한다.
5. 만약, 지교회의 기본자금(부동산)이나 운영자금(동산)이 미약하여 원로목사와 은퇴목사에 대한 예우가 힘들 경우, 지교회는 전임자의 예우를 감당할 수 있는 후임자를 청빙하거나 타 교회와의 합병을 추진할 수 있으며 만일, 조정이 불가할 정도로 신도가 극소수이거나 재정건전성(財政建全性)이 불투명하면 담임자는 시무 사면을 하기 전에 잔여 교인과 협의하여 폐 교회 청원을 할 수 있다. 단, 유고목사는 담임자가 없으므로 소속된 시찰장 또는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절차를 관장할 수 있다.
6. 지교회에서 담임목사에게 국민연금, 총회은급비, 노후보험을 가입케 하여 대납하였을 경우, 본 장정 제2장 제2조제1.2.3.4항에 속한 자는 본 장정 제2장제1조제5항의 원로목사, 은퇴목사, 유고목사의 예(例)에 준하면 된다.

## 제3장 시무사면절차(始務辭免節次)

제3조(사면절차): 본회의 사면절차는 각호와 같다.

1. 원로목사: 헌법교회정치 제4장제4조제4항에 준하며, 담임목사가 시무사면을 하면 지교회는 본회의 직권으로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지도를 받아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전임자 예우절차를 공정하게 매듭 짓는다.
2. 은퇴목사: 헌법교회정치 제4장제4조제12항에 준하며, 총회헌법에 명확한 규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므로

담임목사가 시무사면을 하면 지교회는 본회의 직권으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의 지도를 받아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전임자 예우절차를 공정하게 매듭짓는다.

3. **유고(有故)목사:** 담임(위임, 시무)목사의 갑작스런 작고는 지교회와 유족들에게 상당한 슬픔과 충격이나, 장례 예식이 마무리되면 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의 지도아래 사망인과 미망인의 예우에 대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되 쌍방 간에 억울함이나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공정하게 매듭짓는다.
4. **사고(事故)목사:** 담임(위임, 시무)목사가 지교회에서 불미한 행위를 하였거나 종과실을 범하여 지교회의 당회(제직회)가 본회에 목사의 시무사면을 청원하면 본회는 목사와 지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상세히 들은 후 쌍방 간에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지속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지도하되 모든 절차는 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에게 일임하여 보고받는다.
5. **시무목사:** 헌법교회정치 제4장제4조제2항에 준하며, 은퇴 또는 사직하는 목사와 지교회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교회규칙이나 절차 등에 위반행위가 없으면 본회는 이를 받고 허락할 것이요, 만약 쌍방 간에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해(該)시찰회가 쌍방으로 조용히 사화(私和)하게 종용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회는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올바른 지도를 받게 한다.
6. **절차위법:** 은퇴(사직)목사와 시무교회 간에 쌍방충돌이 발생하여 세상법정에 직접 고소할 경우 본회는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결의(제94,97회)와 헌법교회권징에 준하여 책임을 묻고, 본회규칙 제5장제14조의 절차에 따라 엄준히 치리할 수 있다.
7. **의결정족수:** 공동의회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시무연한:** 만 71세 생일전 날까지이며(총회결의 제93회, 헌법교회정치 제4장제4조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무임목사가 된다.

## 제4장 임시당회장(臨時堂會長)의 직임(職任)

**제4조(직임):** 본회에서 직권으로 파견한 임시당회장의 직임은 각호와 같다.

1. **권한(權限):** 본회의 직권으로 지교회(하위교회)에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그 교회의 임시대표자(법률행위대표자)가 된다. 임시대표자인 임시당회장에 의하지 않는 강도권, 소집(공동의회, 당회, 제직회)은 모두 위법이 된다. 즉, 지교회의 당회원은 소집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당회가 사무(행정업무)는 처리할 수 있지만 임시당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노회의 임시당회장파송이 없으면 지교회는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헌법교회정치 제9장제4조).
2. **임기(任期):** 본회의 직권으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의 임기는 조직교회의 경우 담임목사가 청빙 받아 위임을 할 때까지이며, 미조직교회는 시무할 목사가 청빙 받아 시무하기 전까지이다(헌법교회정치 제9장제4조).
3. **해임(解任):** 본회의 직권으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지교회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본회는 경종을 가리지 않고 그 직무를 거두고, 다른 임시당회장을 지교회에 파송한다.

## 제5장 부첨(附添)

**제5조(미비점):** 본 장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면 회원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찬성으로 수정 및 개정위원을 정하여야하며, 정기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이상 제5장제5개조)

주후 2021년 4월 6일 통과